



통보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1. 통보국가: <u>아랍에미리트</u> 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:
2. 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 MOIAT(산업첨단기술부) 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(가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. MOIAT(산업첨단기술부) 사서함 번호: 2166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전화: (+971) (4) 2084456 이메일: uaetbt@moiat.gov.ae 웹사이트: http://www.moiat.gov.ae
3. 조항 2.9.2 [X], 2.10.1 [], 5.6.2 [X], 5.7.1 [], 3.2 [], 7.2 [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
4. 해당제품(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,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계면활성제(ICS code(s): 71.100.40)
5. 제목(페이지수, 언어): UAE AdBlue(질소산화물 배출 감소를 위한 수용성 요소 용액) 계획안(12페이지, 아랍어)
6. 내용: 이 UAE 기술 규정은 디젤 내연기관 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제로서 요소 수용액(AdBlue)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.
7. 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, 라벨링, 기만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, 환경 보호, 품질 요건
8. 관련 문서: -
9. 채택 예정일: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: 추후 결정
10. 의견 마감일: 통보일로부터 60일

11.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[X] 또는 주소, 전화와 팩스 번호,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, 해당할 경우, 다른 기관:

MOIAT(산업첨단기술부)

UAE TBT 질의처

전화: (+971) (4) 2084456

이메일: uaetbt@moiat.gov.ae

웹사이트: <http://www.moiat.gov.ae>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ARE/25_03547_00_x.pdf